의안번호	제 381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민경환 의원 외 7인
발의연월일	2009년 6월 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민경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1

발의연월일 : 2009년 6월 일
발 의 자 : 민경환·권광택·박영웅·박종갑·심홍섭·송은섭·이범윤·이종호
(8 인)

1. 제안 이유

○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추가하고,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신설 등(안 제2조 ~ 안 제3조)

○ 일부 미비한 조항의 정비 등(안 제5조, 안 제9조, 안 제12 ~ 안 제14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, 안 제27조 ~ 안 제28조, 안 제30조, 안 제34조)

○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 등(안 제29조의2, 안 제32조)

○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의 변경(안 제33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예산조치 :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

7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업”을 “기업 및 서비스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.

제2조제7호 중 “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”를 “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서비스업”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

제2조제12호 중 “이라함은”을 “이라 함은”으로, “기업”을 “기업과 서비스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4호나목 중 “10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낙후지역”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국내 기업”을 “국내·외 기업 및 서비스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국내기업투자”를 “국내·외 기업투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외국인촉진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·군의”를 “시·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중 “투자유치진흥기금”을 “투자진흥기금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“국내기업”을 각각 “국내·외기업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경제투자본부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, “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”을 “투자유치관련 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한”으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“국내기업”을 “국내·외기업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산업자원부장관”을 “지식경제부장관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산업자원부”를 “지식경제부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공장, 연구소를” “연구소, 공장을”로 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서비스업에 대한 지원) ①도지사는 서비스업이 별표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7조를 우선 적용한다.

②부지매입비, 건축비, 건물취득비, 기반시설설치비, 시설·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③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3년간 최고

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30조 제목 중 “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”를 “국내·외기업투자촉진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국내기업투자”를 “국내·외기업투자”로 한다.

제32조 제목 중 “지원한도”를 “지원한도 및 절차”로 하고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,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.

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

제33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 지역경제에”를 “도내 낙후지역에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기업에 대한에”를 “기업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이전기업”이라 함은 수도권(〃서울, 인천, 경기〃지역을 말한다)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(이하 〃타시·도〃라 한다)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, 공장을 충청북도내(이하 〃도내〃라 한다)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.	5. ----------, ---------- **기업 및 서비스업**----------.
6. “공장”이라 함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	6. ----------. **다만,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.**
7. “연구소”라 함은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.	7. ---------- **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**----------.
8. ~ 10. (생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"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" 이라 함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58(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만 해당), 62(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), 63(정보서비스업) 및 70(연구개발업)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.	11. **"서비스업"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**
12. "투자기업"이라함은 도내에 이전·증설·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.	12. -------- **이라 함은** ---------- ---------- **기업과 서비스업** ---------.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
14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(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	14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----- ---------- **제9조** ---------- ----------
15. ~ 17. (생략)	15. ~ 1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**18. "낙후지역"이라 함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.**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국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**국내·외 기업 및 서비스업** ----------.
제5조 (기능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	제5조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**국내·외 기업투자** ----------
제9조(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) ① (생략)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관련 과장이 되며, 「외국인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	제9조(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, **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** ----------.
제12조(투자유치 지원) 도지사는 도내 시·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	제12조(투자유치 지원) ---------- **시·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** ----------.
제13조(투자유치진흥기금) ①(생략)	제13조(**투자진흥기금**) ①(현행과 같음
제14조(기금의 용도) ①(생략) 1. 국내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. 국내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	제14조(기금의 용도) ①(현행과 같음 1. **국내·외기업** ---------- 2. **국내·외기업** ----------

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.	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경제통상국장**---------, ---------- **투자유치관련 과장**----------.
제19조(지방세 감면)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	제19조(지방세 감면) ---------- ---------- **규정한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	제5장 **국내·외기업** 투자지원
제27조(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)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이하 "지원기준"이라 한다.)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7조(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지식경제부장관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자원부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----, **지식경제부** ---------- ----------.

제28조(타 시·도 기업 이전비 지원) ①도지사는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, 연구소를 도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8조(타 시·도 기업 이전비 지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연구소, 공장을**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**제29조의2(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서비스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7조를 우선 적용한다.** **②부지매입비, 건축비, 건물취득비, 기반시설설치비, 시설 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** **③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**

제30조(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국내기업투자 ---------- ----------.	제30조(**국내·외기업투자촉진지구** 지정 및 지원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국내·외기업투자** ---------- ----------.
1.~ 2. (생략)	1.~ 2. (생략)
제32조(지원한도) <신 설>	제32조(**지원한도 및 절차**) **①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,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** **②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.**
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생략) 1.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,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 2.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	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**1.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** **2. 도내 낙후지역에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제34조(시·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) ①도지사는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증설 기업에 대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·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·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군이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	제34조(시·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) ①---------- **기업에** ----------.

〔별표 2〕 지원기준(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와 관련)

구 분	대 상	지원기준 및 지원업종
타 시·도 이전기업 지원	◆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중 [별표 1]을 제외한 지역 및 타 시·도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	○ 사업기간 - 사업기간 3년 이상 (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,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) ○ 기업규모 〈본사 및 공장〉 -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(본사 또는 공장) 또는 일부(본사 또는 공장)가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〈연구소〉 -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〈집단화 이전〉 -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-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-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·BT·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다만, 제천시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, 괴산군, 단양군의 경우는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」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시장·군수가 지정하는 특정업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○ 지원대상 업종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

구 분	대 상	지원기준 및 지원업종
도내공장 증설기업 지원	◆ 도내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	○ 사업기간 -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중일 것 ○ 기업규모 -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○ 지원대상 업종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
서비스업 지원	◆ 수도권 및 타 시·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도내 소재 서비스업이 증설·투자하는 경우	○ 사업기간 - 사업기간 3년 이상 (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,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) ○ 기업규모 -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이고 전부(본사 또는 사업장) 또는 일부(본사 또는 사업장)가 이전·증설하는 경우 이전·증설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○ 지원대상 업종 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중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제조업 제외 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업종 및 골프장 운영업은 제외

관 계 법 령

□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

제15조 (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)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"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,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06.6.29, 2008.12.31>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: 5인 이상
2.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: 5인 이상
3.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: 2인 이상(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)
4.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: 10인 이상

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"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"(이하 "전담부서"라 한다)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. <신설 2006.6.29, 2008.12.31>

1.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
2.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에 따른 자연과학계열·공학계열 및 의학계열(이하 "자연계분야"라 한다)의 학사 이

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6.29>

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6.29>

⑤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"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6.6.29>

⑥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"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6.6.29>

⑦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"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06.6.29, 2008.12.31>

⑧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"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"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

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06.6.29, 2008.12.31>

□ 국민연금법

제9조 (지역가입자)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   가.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   나.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
   다. 별정우체국 직원
   라.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
2. 퇴직연금등수급권자
3.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(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)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5.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.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
제22조 (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<개정 2007.1.5>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<개정 2001.12.31, 2007.1.5>

1.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
1의2.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
2. 외국인투자의 유치·홍보 및 지원

3.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·조사 및 처리

4. 투자지원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·지사·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·업무연락 및 행정협조

5.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

6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

7.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

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항제3호에 따른 접수·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1.5>